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9. 11.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5월 2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보류
제4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 지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행정154-4774, '71. 9. 14)처리하여 왔으나,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2항(구청장은...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조례와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서 업무처리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구세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제6조의2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 위임)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규정을 신설.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허영훈)

동조례 개정안은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현재 동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내부위임되어 있는 지방세 증명서 등의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39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근거 조항이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이며 또한 구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
----------	----

제출년월일 : 1996. 6. 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세 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행정154-4774, '71. 9. 14) 처리하여 왔으나,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2항(구청장은...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조례와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서 업무처리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저 구세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 위임)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규정을 신설.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4.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6조 (부과징수위임) ①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 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 및 가산금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수 있다.</p> <p><신설></p>	<p>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 2(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p>